조정사례 2020 - 5호
(2020.12.29)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손해' 관련 분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

본 조정사례는 동일 분쟁의 반복접수를 방지하고 일률적인 분쟁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사례의 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손해의 분담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 사건번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23호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212호

□ 주요쟁점

○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손해(간접손해) 인정 여부

□ 진행사항(세부)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23호**

- 2017.09.26. : 교통사고 발생(피신청인차량이 신청인 차량을 후미 추돌한 사고 / 주요진단명 : 경・요추 염좌, 뇌진탕
- 2017.09.27.~2017.10.17. : 입원치료(연차 10일 사용-일 239,620원)
- 2017.10. : 대인배상 합의금(공제금) 분쟁 발생(휴업손해, 명절 연휴를 위하여 입국한 동승자들의 항공료 840,000원 등)
- 2020.04.13.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019-212호**

- 2018.05.19. : 교통사고 발생(피신청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3중 추돌 사고, 신청인 차량은 첫 번째 차량 / 주요진단명 : 경・요추 추간판 탈출증)
- 2019.11. : 대인배상 합의금(공제금) 분쟁 발생(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한 여행 숙박 취소 수수료 126,000원 등)
- 2020.12.06.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접수

□ 주장사항

신청인

ㅇ 특별손해(간접손해) 인정 주장

1) (2019-23호) 교통사고로 발생한 직·간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입국한 가족들이 어떠한 휴가도 즐기지 못한 채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기 지출한 항공료 840,000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

2) (2019-212호) 교통사고로 발생한 직·간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 되어야하는 것이 타당한바,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물론 사고 발생 전 예약한 숙박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 126,000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

피신청인

ㅇ 특별손해(간접손해) 불인정 주장

1) (2019-23호)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가족은 이미 항공기 탑승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2) (2019-212호)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 계약 취소 수수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Ⅱ 조정 결과

▣ (2019-23호) : 신청인의 항공료 청구 불인정(특별손해 해당)

▣ (2019-212호) : 신청인의 숙박계약 취소 수수료 불인정(특별손해 해당)

Ⅲ 결정 이유

□ (2019-23호, 212호)

○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항공료·숙박 계약 취소 수수료는 불법행위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

붙임 1. 관련 규정

□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763조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붙임 2. 관련 판례 및 사례

1. 제393조 제1항 '통상의 손해'의 의미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대법원 2018다286550, 대법원 2009다24842)

2.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의 의미

ㅇ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 (대법원 2006다25745)

ㅇ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 (대법원 95다11344)

*** '간접적 손해'의 의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33070)

3. '특별손해'의 판단 기준

ㅇ **불법행위자의 예견 내지 예견가능성**

- 특별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95다11344 등)

ㅇ **상당인과관계(개연성)**

-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94다60257)

-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의 손해는 을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대법원 2018다286550)

4.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경우

1) 피고가 이 사건 인근의 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농장 앞을 운행하던 중 피고가 적재함을 내리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전신주와 인근 전신주의 연결 전선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걸려 당겨지면서 전신주가 결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입은 가축 폐사, 모돈의 유·조·사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680)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돼지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로서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좁은 농로였고, 위 도로의 바로 옆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아침 시간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②전신주는 이 사건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농장으로 들어오는 인입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인근에서 토사 하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농장의 존재 및 전신주의 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 등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농장에는 동물관련 시설임을 외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료저장시설, 분뇨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혹한기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이 폐사, 유·조·사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70%로 제한)한 사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 훼손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격락손해) 인정기준 (대법원 2016다267036)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 수리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0818)

수리(修理)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곳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뜻하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이러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대상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가치를 적정히 평가한 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고장 전의 기능 및 가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고장난 물건을 손보아 고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가치의 일부를 회복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자동차의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 및 가치를 고려하면, 충돌 사고로 자동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훼손된 경우 정비를 통해 종래의 외형을 일응 복구하고 운송장치로서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자동차가 사고 전과 같은 상태로 고쳐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격락손해를 인정한 사례

3)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무원 임용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 산정방법 (대법원 92다2938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가 1989.4.5. 이 사건 사고로 사망 이전인 그해 3월경 1989년도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인 5.27.자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위 망인은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1989.10.12. 임용되었는데 판시와 같이 위 망인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그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공유수면매립공사시공 잘못으로 뚝이 무너져 어장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결과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83다카716)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장이 손상을 입은 당시 위 어장을 위 **손상 입기 전의 상태로 복구함에 필요한 비용과 위 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어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의 합계액, 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손상을 입은 당시 그 손상된 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당원의 누차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과 입증이 없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이 양식 중이던 고막과 굴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채취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와 위 어장을 복구하거나 혹은 그 복구가 불가능하여 훼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어장과 같은 규모의 새로운 어장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될 상당기간 동안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그에 따른 급여의 인상 조정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 93다9880)

사고 이후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위 망인과 같은 노무직 1급주임의 월급이 사고 후 그 다음 해에 인상된 데 터잡아 그 임금인상분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에 포함시킨 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6)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에 전략공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94다5472)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 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주 충격사고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장지대에 위치한 위 전주 충격사고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위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인근 원고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자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소외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7)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상여금 및 기본급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방법 (대법원 94다60257)

소외 회사가 소외 망 ○○○의 사망 후에 종업원의 상여금을 인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을 각 인상하였으며, 위 망인과 같은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8)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에 대한 일실수익 청구(대법원 96다52236)

단기 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단기하사로 복무 중인 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1995년도 중사 진급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위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진급 심사에서 제외된 점, 육군의 경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하사에서 중사에로의 **평균 진급률은 99%**에 이른 점, 육군은 피해자가 진급 대상이 된 1995년도부터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 전·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등 진급 낙천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하사를 중사로 100% 진급시키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같이 **임용된 동기생들에 대하여 실시된 중사 진급 심사 결과 모두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1995. 1. 1. 부로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기생들이 진급한 날부터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하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날 이후 **일실수입은 중사의 급여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9)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환자 후송비용, 체류비용, 전화요금, 귀환운송비 등)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다286550)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 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갑이 여행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사고 이후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여행업자인 을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0)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실려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9247)

○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 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91다5150 판결 참조),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 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5.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불인정한 경우

1)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반영한 일실수익으로 청구한 경우(대법원 89다카14639)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중략),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않았다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한 기일을 도과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계약상의 지체손해금 배상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90다10803)

원심은 교통사고로 적재 되어 있던 기계들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단지 그 교환가치가 금 330,000원 정도 되는 일부 품목이 잔존하여 위 원고는 그 차액인 금 12,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중략), 위 기계 등을 소정기일 내에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1일 금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사고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위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본 사례

3) 의료원 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대법원 97다5849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 금 3,000,000원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수리기간(부품 조달기간 등)이 길어져 임차한 고가의 외제 이륜차량의 대차료 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실제로 14일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①피해차량과 같이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인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이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를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누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취지는 수리기간 동안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므로, **통상의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피해차량이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로서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간이고 대차료도 고액이 될 것이라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바, 적정 수리기간 4일,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신차가격과 유사한 신차가격을 형성하는 중소형차량의 1일 대차료 67,5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5)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안의 기온이 외부 온도에 가깝게 떨어져 원고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동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95다11344)

이 사건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원고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로서는 이 사건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므로 위 전신주의 전선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정 및 위 비닐하우스 내에는 보온 유지가 필수적인 농작물이 재배되고,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전신주의 충격으로 전선이 절단되어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부근의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다른 비닐하우스에는 1시간 만에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전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작물의 동해는 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달리 비닐하우스 내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인바(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재배 작물을 위해 필요한 보온 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보온 유지가 되지 아니한 채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6) 가해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량의 격락손해 및 제반비용(블랙박스 SD카드 구입비용, 휴업손해, 시세하락 평가 감정비용),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대전지방법원 2019나107812)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범퍼 및 휀더를 교체하였는데 그 수리비로 총 차량 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82만원 가량이 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차량기술사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손해액(이하 '격락손해'라 한다)을 감정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55만 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시세평가를 위한 비용으로 위 기술사에게 11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손해액은 66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작성한 차량시세평가서(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① 이는 원고 차량과 같은 교통사고 이력 및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교환가치의 감소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인 점, ② 그 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주요골격부위 손상 차량은 '사고차'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무사고차량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프런트휀더, 범퍼, 사이드실가이드 등의 수리이력으로 인하여 사고 전보다 낮은 중고차 시세가 형성된다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관행적 사실만으로 수리 후 원고 차량에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수리가 가능함에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경우,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7) 축구교실 수강생이 교육 중 골절상을 입어 입원한 경우 간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사용한 연차수당, 상급병실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793)

○ 피고가 청구하는 위 입원 치료비 중에는 통상의 입원 치료비로 볼 수 없는 상급병실료 1,48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입원 치료비 중 '입원료 1인실 병실료 차액 1,480,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병실료로 보이고, **피고는 위 상급병실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상급병실료 합계 1,480,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어 위 입원 치료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피고의 모친이 근무한 회사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그 기간 만큼 반드시 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 연가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이 연차휴가수당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일실이익 상실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다만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입원기간에 따른 개호비용 인정)고 보아 상급병실료, 부모의 연차수당을 불인정한 사례

붙임 3.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2019-23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

1. 번호 및 사건명 : 제3-13호(분쟁 2019-23) 대인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신 청 인 : 김○○ (남, 사고 당시 만 41세)

피신청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공제조합이사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와의 사이에 공제계약(계약자동차 : ○○○○○○호, 공제기간 : 2017.○○.○○.~2018.○○.○○.)을 체결한 사실.

ㅇ 2017.09.26. 21:17분경 ○○도 ○○시 ○○○로 ○○길 노상에서 피신청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신청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이 건 사고로 10일간 연차를 사용한 후 추가로 11일(총21일) 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u>입원 기간 21일에 대한 휴업손해 4,656,469원</u>{(평균연월차 239,620원×10일=2,396,200원)+(명절 및 주말 입원일수

11일, 평일 평균 기타 205,479원×11일=2,260,269원)}을 인정할 것을 주장.

나) 사고발생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가족들이 도착하자마자 사고를 당하여 심적 고통이 심하였는 바, 신청인이 부담한 **항공료 840,000**원을 보상할 것을 주장.

다) 사고로 추석 명절을 망쳐버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총 4,000,000원** (신청인 1,000,000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2명 2,000,000원)을 인정할 것을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하여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 10일 사용에 의한 수입감소액 1,154,594원**(1,358,347원×85%)를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

나) 신청인 주장의 항공료에 대하여,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항공기 탑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된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

다) 신청인 주장의 위자료에 대하여 자동차공제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상급수 11급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은 2019.05.17. 개최한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인 손해배상금 4,300,000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나. 이 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으로서 2019년 제3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연차수당을 반영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인손해배상금 4,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항공료 840,000원은 민사손해배상 원칙상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불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19년 5월 17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붙임 4.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2019-212]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안

1. 번호 및 사건명 : 제2-17호(분쟁 2019-212) 대인손해배상분쟁

2. 분쟁 당사자

ㅇ 신 청 인 : 김○○(여, 사고 당시 만 43세)

ㅇ 피신청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공제조합이사장)

3.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가. 사실관계

ㅇ 피신청인은 조합원 ○○○○(주)와의 사이에 자동차공제계약(계약자동차 : ○○○○○호, 공제기간 : 2018.○○.○○.~2019.○○.○○.)을 체결한 사실.

ㅇ 2018.05.19. 18:20분경 ○○시 ○○구 ○○동 부근에서 피신청인차량이 신청 외 3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신청인차량은 첫 번째 차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은

가) 본 사고로 신청인은 가운데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10m 이상을 밀려날 정

도의 큰 충격이 있었으며 상당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요추의 추간판 탈출로 인한 운동제한 및 통증이 잔존하므로 신청인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따라 척주손상 V-A항 23%의 1/2인 11.5% 영구장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나) 신청인은 본 사고로 14일의 입원과 85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수의 1/3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다) 신청인은 본 사고로 **응급실 치료비, 약제비, 비급여 치료비, 검사료, 제증명료로 총 2,456,827원**을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라) 신청인은 본 사고로 응급실 이동, 병원 이동으로 교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통원일수 1일당 10,000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마) 신청인은 본 사고로 예정되어 있던 여행이 취소되어 숙박업체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바, **126,000원(숙박비용 420,000원×30%)의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바)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실무에 따른 **위자료 23,000,000원**과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으로 예상판결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2) 피신청인은

가) 추간판은 두꺼운 섬유륜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한 전종인대와 후종인대로 보호받고 있으며 아주 강한 외력에 의하여 섬유륜이 파열되며 수액이 돌출되는 형태로 추간공의 신경 다발을 자극하며 통증이 유발되나 **본 사고는 경미한 단순 접촉으로 섬유륜이 파열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을 보면 진단서상 **M코드로 기재된 경추병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왕 병변**인 점, MRI 결과지에 퇴행성 L4-5 bulging disk로 기재되어 있는 점, **T2 영상에서 해당부위가 검게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부상은 염좌에 해당하는바, **장애는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신청인차량 파손 사진 참조)

나) 휴업손해에 대하여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치료기간 동안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85%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이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휴업손해는 전액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다) 권리입증비용인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용, 음료, 과자 구입한 병원소모품비 등 청구한 대부분의 직불비용은 인정 불가하며 **약제비 12,6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라)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청구기준을 법원 예상판결금액으로 삼고 있음에도 통원치료 1회당 10,000원의 교통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본 사안은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공제 약관상 기타손해배상금 통원기준 일 8,000원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마) 신청인 주장의 숙박 취소수수료는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의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손해이므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바) 본 사안은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바, **자동차공제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염좌(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0,000원**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4. 조정결정 사항

가. 의결사항

이 사건은 2020년 제2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휴업손해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수의 1/3, 직불치료비 1,706,667원, 기타 손해배상금 실제 통원기간 일 8,000원을 인정하되 척주체 장애 및 숙박취소 수수료는 불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자동차공제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나. 이 유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교통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대인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으로 각 분쟁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양 당사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신청인의 과실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② 양 당사자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신청인의 부상은 신경근을 압박하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영상검사 결과 역시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염좌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장애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③ 신청인은 사고 부상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시행하여 생업 종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수의 1/3의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④ 신청인의 직불치료비 중 병원 소모품비, 비급여 진료비, 제증명료, 도수치료비 등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고려하여 1,706,667원의 직불치료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⑤ 자동차 공제약관 기준에 따라 실제 통원일수에 따른 일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⑥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숙박 계약 취소 수수료는 불법행위 가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⑦ 신청인의 장애를 불인정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 산정은 자동차 공제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의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20년 3월 27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